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1. 29.>

시설물 용도제한(제4조 관련)

구 분	구 역	소음영향도 [Lden _{dB} (A)]	용 도 제 한 지 역
소 음 대 책 지 역	제1종	79 이상	1. 완충 녹지지역(이륙·착륙 안전지대) 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가능
	제2종	75 이상 79 미만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제3종	61 이상 75 미만	1. 준공업지역 2. 상업지역

비 고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